|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18호  국무원 제83차 상무회의 결정사항을 시행하고 민간 개인간의 투자를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5]41호)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는 비화폐성 자산투자행위가 발생하여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한 개인이 납세자이다.  2.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는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에 스스로 신고 납부한다.  3. 납세자가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을 주관세무기관으로 한다;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권으로 대외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을 주관세무기관으로 한다; 납세자가 기타 비화폐성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기업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을 주관세무기관으로 한다.  4. 납세자의 비화폐성 자산투자의 납세표준액은 비화폐성 자산 양도수입에서 그 자산의 원가 및 합리적인 세금을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5. 비화폐성 자산의 원가는 납세자가 그 자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비화폐성 자산 원가 증빙을 제공할 수 없어 비화폐성 자산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그 비화폐성 자산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6. 합리적 세금이라 함은 납세자가 비화폐성 자산투자 과정 중 발생한 자산이동에 관한 세금 및 합리적 비용을 가리킨다.  7. 납세자가 지분권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권의 원가확인 등 관련 문제는《지분권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행)》(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67호 발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납세자는 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를 분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달 15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납세계획을 세워 주관세무기관에《비화폐성 자산투자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첨부 참조), 납세자 신분증명, 투자협의서, 비화폐성 자산 평가가격 증명서류, 비화폐성 자산 원가 및 합리적 세금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015년 4월 1일 전에 발생한 비화폐성 자산투자인 경우 기한이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아직 세수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분기별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는 본 공고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관세무기관에 분기별 납세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9. 납세자는 분기별 납세기간동안 원 분기별 납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분기별 납세계획을 재작성하고 주관세무기관에《비화폐성 자산투자 의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10. 납세자가 분기별 납세 계획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처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비안을 받은《비화폐성 자산투자의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와 당기 이전 각 기간마다 납부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납세자는 분기별 납세 기간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권 양도한날의 익월 15일 이내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2. 피투자기업은 납세자가 비화폐성 자산으로 투자한 취득한 본 기업의 지분권과 분기별 납세기간 동안의 납세자의 지분권 변동상황은 각각 관련 사항이 발생한 후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세무기관의 집행공무에 협조한다.  13. 납세자와 피투자기업이 규정에 따라 비안, 납세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4. 본 공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비화폐성 자산투자의 개인소득세 분기별 납부 비안표》및 작성방법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547914/part/1547930.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4월8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个人非货币性资产投资有关个人所得税征管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20号  　为落实国务院第83次常务会议决定，鼓励和引导民间个人投资，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非货币性资产投资有关个人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5〕41号）规定，现就落实个人非货币性资产投资有关个人所得税征管问题公告如下：  　　一、非货币性资产投资个人所得税以发生非货币性资产投资行为并取得被投资企业股权的个人为纳税人。  　　二、非货币性资产投资个人所得税由纳税人向主管税务机关自行申报缴纳。  　　三、纳税人以不动产投资的，以不动产所在地地税机关为主管税务机关；纳税人以其持有的企业股权对外投资的，以该企业所在地地税机关为主管税务机关；纳税人以其他非货币资产投资的，以被投资企业所在地地税机关为主管税务机关。  　　四、纳税人非货币性资产投资应纳税所得额为非货币性资产转让收入减除该资产原值及合理税费后的余额。  　　五、非货币性资产原值为纳税人取得该项资产时实际发生的支出。  　　纳税人无法提供完整、准确的非货币性资产原值凭证，不能正确计算非货币性资产原值的，主管税务机关可依法核定其非货币性资产原值。  　　六、合理税费是指纳税人在非货币性资产投资过程中发生的与资产转移相关的税金及合理费用。  　　七、纳税人以股权投资的，该股权原值确认等相关问题依照《股权转让所得个人所得税管理办法（试行）》（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7号发布）有关规定执行。  　　八、纳税人非货币性资产投资需要分期缴纳个人所得税的，应于取得被投资企业股权之日的次月15日内，自行制定缴税计划并向主管税务机关报送《非货币性资产投资分期缴纳个人所得税备案表》（见附件）、纳税人身份证明、投资协议、非货币性资产评估价格证明材料、能够证明非货币性资产原值及合理税费的相关资料。  　　2015年4月1日之前发生的非货币性资产投资，期限未超过5年，尚未进行税收处理且需要分期缴纳个人所得税的，纳税人应于本公告下发之日起30日内向主管税务机关办理分期缴税备案手续。  　　九、纳税人分期缴税期间提出变更原分期缴税计划的，应重新制定分期缴税计划并向主管税务机关重新报送《非货币性资产投资分期缴纳个人所得税备案表》。  　　十、纳税人按分期缴税计划向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时，应提供已在主管税务机关备案的《非货币性资产投资分期缴纳个人所得税备案表》和本期之前各期已缴纳个人所得税的完税凭证。  　　十一、纳税人在分期缴税期间转让股权的，应于转让股权之日的次月15日内向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十二、被投资企业应将纳税人以非货币性资产投入本企业取得股权和分期缴税期间纳税人股权变动情况，分别于相关事项发生后15日内向主管税务机关报告，并协助税务机关执行公务。  　　十三、纳税人和被投资企业未按规定备案、缴税和报送资料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有关规定处理。  　　十四、本公告自2015年4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  　　附件：《非货币性资产投资分期缴纳个人所得税备案表》及填报说明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547914/part/1547930.xls>  国家税务总局  2015年4月8日 |